

< 늘푸른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 1 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 1조 (이용정원)	서비스 대상 어르신은 22명으로 한다.
제 2조 (이용자 모집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의 등의 내방, 전화문의 등을 통한 모집. 2.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와 프랑카드, 리플릿 등을 활용한 모집. 3. 기관 차량 외부 사업홍보 부착 광고를 통한 모집. 4. 지인의 추천이나 지역사회 단체 등 자원 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

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3조 (계약기간)	<p>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등급판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 지정한 날까지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센터는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p> <p>② 등급갱신이나 수가의 변경 등으로 인한 서비스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를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한다. 단, 계약서 및 첨부서류는 계약의 만료시까지 서비스 대상자가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서비스 대상자 및 대리인의 이의가 없을시 본 계약은 갱신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p> <p>③ ①항의 계약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p>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센터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p>
제 4조 (서비스계약 목적)	센터와 이용자간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센터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을 수행함으로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이용어르신에게 재가복지를 제공함으로 잔존 능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내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지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5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에 비용 부담액)	<p>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 용으로 한다.</p>

	<div>②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div> <table><tr><td>1. 식재료비</td><td>2. 이, 미용비</td><td>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td></tr></table> <div>4.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div> <div>③ 센터의 월 이용료는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로 감액하고 준경감은 9%로 감액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div> <div>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기타 비급여 비용은 센터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div> <div>⑤ 기타 비급여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과의 계약에 따른다.</div> <div>⑥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div>	1. 식재료비	2. 이, 미용비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1. 식재료비	2. 이, 미용비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제 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div>① 이용절차의 검토를 통하여 이용이 필요하다 인정되면 센터와 이용자(보호자) 간의 계약을 체결한다.</div> <div>② 이용 계약 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노인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 신분증 등</div> <div>③ 신원인수인의 권리</div> <div>1. 이용자가 표준약관에 따른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div> <div>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div> <div>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div> <div>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청결하고 안전한 시설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div> <div>5. 이용자의 급여제공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권리</div> <div>6.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div> <div>7. 급여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해지사항 발생시 고지의 의무</div> <div>④ 신원인수인의 의무</div> <div>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알릴 의무</div> <div>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본인 부담금 등 이용료 납부의 의무</div> <div>3. 이용자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알릴 의무</div> <div>4. 보호자 역할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하여 알릴 의무</div> <div>5. 이용자로 인하여 시설의 설비, 집기 등의 파손 및 멸실 시 배상의 의무</div> <div>6. 급여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해지시 알릴 의무</div>			
제 6조 (서비스제공)	<div>① 서비스 제공 원칙은 다음과 같다.</div> <div>1.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div>			

	<p>2. 이용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3.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p> <p>②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p> <table> <tr> <td>1. 신체기능서비스</td><td>2. 인지활동형서비스</td></tr> <tr> <td>3. 사회적응서비스</td><td>4. 자원봉사를 통한 서비스</td></tr> <tr> <td>5. 정서지원서비스</td><td>6. 일상생활지원서비스</td></tr> <tr> <td>7. 여가활동지원서비스</td><td>8.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서비스</td></tr> </table> <p>③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 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p>	1. 신체기능서비스	2. 인지활동형서비스	3. 사회적응서비스	4. 자원봉사를 통한 서비스	5. 정서지원서비스	6. 일상생활지원서비스	7. 여가활동지원서비스	8.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서비스
1. 신체기능서비스	2. 인지활동형서비스								
3. 사회적응서비스	4. 자원봉사를 통한 서비스								
5. 정서지원서비스	6. 일상생활지원서비스								
7. 여가활동지원서비스	8.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서비스								
제 7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및 절차)	<p>① 센터는 다음의 이용료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용자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된 경우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에 의하여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5. 장기요양서비스의 비급여 비용을 변경한 경우 <p>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산정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통보한 후 적용 2. 본인부담금의 감경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통보한 후 적용 3. 제공시간 및 횟수의 변경시 보호자와 협의하여 적용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통보한 후 적용 5. 비급여비용의 변경시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통보한 후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적용 								
제 8조 (계약의 해지)	<p>①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예약기간이 만료된 때 <p>② 본인이 사망한 경우</p> <p>③ 사회복지사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 중단이 필요한 때</p> <p>④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하는 경우</p> <p>⑤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센터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거나 타 입소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p> <p>⑥ 본인부담금등 이용료를 장기간 연체하는 경우</p>								

제 3장.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01.01.)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6.01.01._8시간 기준)

등 급	2026년 수가	본인부담금(15%)	본인부담금(9%)	본인부담금(6%)
2등급	64,590원	9,689원	5,813원	3,875원
3등급	59,640원	8,946원	5,368원	3,578원
4등급	58,010원	8,702원	5,221원	3,481원
5등급	56,360원	8,454원	5,072원	3,382원
인지지원등급	56,360원	8,454원	5,072원	3,382원

- 인지지원등급은 하루 8시간 기준 12회만 인정됩니다.
- 1일 식·간식대 5,800 원
- 공휴일 이용 시 하루 이용액의 30%가 가산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 분		1일 본인부담금 (식·간식대 5,800원 포함)		
		일 반 (15%)	경 감 (9%)	경 감 (6%)
본 인 부 담 금	2등급	15,489 원	11,613 원	9,678 원
	3등급	14,746 원	11,168 원	9,378 원
	4등급	14,502 원	11,021 원	9,281 원
	5등급	14,254 원	10,872 원	9,182 원
	인지지원(12회)	14,254 원	10,872 원	9,182 원
구 분		25일 본인부담금 (식·간식대 5,800원 포함)		
		일 반 (15%)	경 감 (9%)	경 감 (6%)
합 계	2등급	387,225 원	290,325 원	241,950 원
	3등급	368,650 원	279,200 원	234,450 원
	4등급	362,550 원	275,525 원	232,025 원
	5등급	356,350 원	281,800 원	229,550 원
	인지지원(12회)	171,000 원	130,464 원	110,184 원